

1. 개정이유

'49년 정부 당직 도입 이후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휴무 부여 기간 확대(안 제14조 제2항)

- 현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당일만 당직 휴무가 가능하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조정(안 제18조, 안 제23조 제1항, 제2항)

-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중 '방법·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임무는 기관 필요시 수행 업무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에도 반영함.

다. 중앙행정기관 당직편성 인원 기준 감축(안 제21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 일·숙직시 당직근무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현재 2명 이상 → 1명 이상'으로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함.

라.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 및 합리적 편성 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

- 통합당직 기관의 범위를 '둘 이상의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는 경우 외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당직근무 인원을 단순히 당직근무대상 인원의 과소가 아닌 통합당직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당직 미 실시 요건 확대(안 제21조 제3항, 제4항)

- 상시 상황실 운영 기관은 원칙적으로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당직임무를

상시 상황실에 부여하되 기관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실시하도록 함.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 기준을 ‘現 1인 2주 1회 초과 → 1인 4주 1회 초과’로 완화하여 소규모 소속 기관의 당직 부담을 경감함.

바. 재택당직 협의절차 폐지(안 제21조 제5항)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협의절차를 폐지함.

사. 기관별 당직운영 현황 통보 근거 신설(안 제21조 제6항)

- 신속·정확한 당직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기관의 당직운영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아. 당직민원시스템 활용 근거 및 민원응대 기준 마련 (안 제23조 제4항, 제5항)

- 야간·휴일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당직민원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당직근무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당직근무자의 전화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24. ~ 12. 22.) 예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날로”로,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를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등 당직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치하여”를 “위치하거나 기관간 위치가 근접하여”로, “있으며,”를 “있으며, 통합당직의 기능 및 성격, 기관의 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 총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주”를 “4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고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 상황실의 기능,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임무를 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각 기관의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소속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중 전화민원 등에 응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당직민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전화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생략)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u>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u> 해야 한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날로</u> ----- ----- ----- ----- <u>1일의 일정 시간 동안</u> ----- <u>휴무</u> ----- ---.
제1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u>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u>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당직실의 위치) ----- ----- <u>당직근무</u> ----- ----- ----- -----. ----- ----- ----- -----.
제21조(당직의 편성) ① 중앙행정	제21조(당직의 편성) ① -----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

----- 1명 -----

-----.

-----.

② -----
--- 위치하거나 기관간 위치가 근접하여 -----

----- 있으며, 통합 당직의 기능 및 성격, 기관의 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 총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 <단서 삭제>

③ -----

-----.

1. -----

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생략)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
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
우

<신설>

④ (생략)

<신설>

4주-----

2. (현행과 같음)

<삭제>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
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고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
는다. 다만, 상시 상황실의 기
능,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임무
를 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
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각 기관의 당직근무 실시 여
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
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
신처장에게, 소속기관의 장은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

----.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 한다. <단서 삭제>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
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중 전화민원 등에 응대하기 위
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당직
민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전화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